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소방공무원의 차량운영관리 업무태만 등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관 련 자 ① 경상남도 ○○○○과 지방○○위 ○○○

② 경상남도 ○○소방서(전 ○○○○과) 지방○○장 ○○○

내 용

지방○○위 ○○○은 2014. 1. 1. 부터 2015. 3. 1. 까지, 지방○○장 ○○○은 2015. 3. 2.부터 2015. 12. 9. 까지 경상남도 ○○○○과에서 근무하면서 공용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차량운영관리 업무 태만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경상남도규칙 제3095호)」 제3장 제22조(배차신청)와 제23조(배차승인)는 공용차량을 이용시 신청과 승인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같은 관리규칙 제24조와 제25조는 공용차량의 유류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에는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차량 운행일지, 차량현황관리,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공용차량 운용시 기록관리를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49구 2007차량에 대해 2014월 11월 19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기록 등의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공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소 속	계 급	성 명	관련업무 근무기간
○○○○과	지방○○○	○○○	2014. 1. 1 ~ 2015. 3. 1
○○○○서	지방○○○	○○○	2015. 3. 2 ~ 2015.12. 9

2. 근무지의 출장기간 중 부당한 초과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73호)」 ‘제6장 초과근무 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의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중 ‘바. 출장’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Ⅵ. 8’에는 출장 시 초과근무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 1.부터 2015. 12. 9까지 근무지의 출장기간 중임에도 ‘소방본부장님’을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근무지의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소 속	계 급	성 명	근무지의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	
			2014년	2015년
○○본부 ○○○○과	지방○○위	○○○	52회 112시간	3회 6시간
○○소방서	지방○○장	○○○	-	32회 74시간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유사한 사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